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 26.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1. 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1. 1. 18.

다. 상정일자: 제246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1. 1. 2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가. 제안이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존속기한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
(안 제2조의2)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일부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존속기한 종료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안 제2조의2)에 따른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1년 3월 16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 타: 없음

 [처음으로](#)